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2조의2(주권의 수요상황의 사전 파악) ① 영 제129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규모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전체 합계액은 영 제129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전문투자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해당 시점까지 일평균 평가액)으로 계산한다.

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인 경우 : 집합투자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일 것
2. 투자일임업자인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일 것

② 영 제129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주권 가격의 공정한 평가,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③ 영 제129조의3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영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는 등 협회가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④ 영 제129조의3제2항제4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3개 이상의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청약의 권유(영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제안을 포함한다)를 했으나 해당 전문투자자가 거절하거나 영 제129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요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제2-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2조의3(주권의 사전 청약) ① 영 제129조의4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협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자산규모가 사전 청약 금액의 20배 이상일 것을 말한다.

② 영 제129조의4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전문투자자별로 사전 청약한 수량의 100분의 20 이상 : 10개월
2. 전문투자자별로 사전 청약한 수량의 100분의 30 이상 : 8개월
3. 전문투자자별로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잔여 수량 : 6개월

③ 영 제129조의4제3항에 따라 청약을 권유할 수 있는 주권의 수량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1. 전체 상한 : 전체 공모 수량의 100분의 25이하로서 주권을 배정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협회가 정하는 수량

2. 전문투자자별 상한 : 전체 공모 수량의 100분의 15이하로서 주권을 배정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협회가 정하는 수량

④ 영 제129조의4제6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영 제129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는 등 협회가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⑤ 영 제129조의4제6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2개 이상의 전문투자자를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1개의 전문투자자에게만 청약의 권유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2-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2조의4(주권의 사전 정보 제공에 대한 기록의 유지·관리) 영 제129조의5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란 정보를 제공한 전문투자자를 선정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12조의2(주권의 수요상황의 사전 파악) ① 영 제129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규모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전체 합계액은 영 제129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전문투자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해당 시점까지 일평균 평가액)으로 계산한다.</u> <u>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인 경우 : 집합투자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일 것</u> <u>2. 투자일임업자인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일 것</u> <u>② 영 제129조의3제1항제3호에</u>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주권 가격의 공정한 평가,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③ 영 제129조의3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영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는 등 협회가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④ 영 제129조의3제2항제4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3개 이상의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청약의 권유(영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제안을 포함한다)를 했으나 해당 전문투자자가 거절하거나 영 제129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요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를

<신 설>

말한다.

제2-12조의3(주권의 사전 청약)

① 영 제129조의4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협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자산규모가 사전 청약 금액의 20배 이상일 것을 말한다.

② 영 제129조의4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전문투자자별로 사전 청약한 수량의 100분의 20 이상 : 10 개월

2. 전문투자자별로 사전 청약한 수량의 100분의 30 이상 : 8개월

3. 전문투자자별로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잔여 수량 : 6개월

③ 영 제129조의4제3항에 따라 청약을 권유할 수 있는 주권의 수량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1. 전체 상한 : 전체 공모 수량

<신 설>

의 100분의 25이하로서 주권을
배정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협회가 정하는 수량

2. 전문투자자별 상한 : 전체 공
모 수량의 100분의 15이하로
서 주권을 배정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협회가 정하는 수량

④ 영 제129조의4제6항제2호에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방법”이란 영 제129조의4
제1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받는 등 협회가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⑤ 영 제129조의4제6항제3호에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경우”란 2개 이상의 전문
투자자를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1개의
전문투자자에게만 청약의 권유
를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말한
다.

제2-12조의4(주권의 사전 정보 제
공에 대한 기록의 유지·관리)
영 제129조의5제5호에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u>료”란 정보를 제공한 전문투자 자를 선정한 기준 및 절차에 관 한 자료를 말한다.</u>
--	--